

피고인의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고 민 조[†]

박 주 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학생 대상자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다르게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최초판단은 물론 이후에 제시되는 쟁점별 증거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 성격증거를 제시하면, 긍정적 성격증거를 제시하는 조건에 비해 유죄 판단 확률과 유죄 판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영향을 받는 유·무죄판단은 이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쟁점별 주장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을 했을 경우 검사 측의 주장을, 무죄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변호인 측 주장을, 각각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죄로 판단한 실험참여자는 무죄로 판단한 실험참여 자보다 쟁점별 유죄 판단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성격증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초기 판단이, 확증 편향과 신념고수 현상을 일으켜, 이후의 증거 판단과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까지 유지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러한 편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 성격증거, 사실인정, 증거판단, 확증편향, 공판절차이분화

* 이 논문은 제1저자 고민조의 2016년도 박사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교신저자 : 고민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M16동 516호

E-mail: minjo7@snu.ac.kr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다양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적으로는 판단해야 할 문제와 관련된 정보만 고려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해야 한다. 그런데 날씨나 정보 제시 순서 등과 같이, 판단해야 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Tversky & Kahneman, 1986; Pohl, 2017; Wiseberg, 2010). 이러한 현상은 법적 판단 장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Kassir과 Sommers(1997) 그리고 London와 Nunez(2000)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는 ‘피고인의 특성’도 포함된다. 피고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피고인의 외모나 인종,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Blanck, Rosenthal & Cordell, 1985; Daudistel *et al.*, 1999; Gleason & Harris, 1976; Nagel & Weitzman, 1972). 그러나 외적 특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적특성도 사실인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는 그 중 하나다. ‘성격증거’란 기소된 혹은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정보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심리과정에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적극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¹⁾. 그렇

1) 영미법상 피고인의 모든 성격증거를 항상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몇몇 법학자들이 영미법상 피고인의 성격증거의 배제 및 허용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일룡(2009)은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성격증거의 취급과 허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용철(2009)은 미국법상 성격증거 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 강간피해자 보호법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영범(2013)은

지만 성격증거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리 활발하지 않다.

성격증거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이유가 이들이 심리(審理)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 재판의 최종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법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배심원들의 판단도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최종 판결에 이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기술 등의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각 쟁점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무수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를 구별하고 후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실인정과정을 통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구분하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구분되더라도, 위에서 소개한 ‘피고인의 특성’에서처럼, 때때로 법관이나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판 상황에서 불공정한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증거’는 미국증거법의 ‘Character Evidence’를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Personality’와 ‘Character’ 모두 ‘성격’으로 번역되고 있다. 심리학내에서 ‘Personality’와 ‘Character’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Banicki, 2017;

영미법상 성격증거 배제의 근거와 허용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Gill, 1990; Goldie, 2004; Kristjansson, 2012; Kupperman, 1991; McKinnon, 1999) 아직까지 두 용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이 두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영미법에서 ‘Character Evidence’를 ‘성격증거’로 표현하는 것이 법률상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심리학에서 성격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Personality’와 ‘Character’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영미법에서의 ‘Character Evidence’의 의미와 심리학에서의 ‘성격’간의 의미상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리학에서의 ‘Personality’와 ‘Character’

심리학에서 ‘성격’을 언급할 때 주로 ‘Personality’를 사용한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가면’ 혹은 ‘탈’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했는데, 학자마다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Allport(1961)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으로, Mischel(1976)은 ‘성격은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패턴’으로 각각 정의한다. Feist와 Feist(2006)는 성격은 ‘인간의 행동에 일관성과 개별성을 주는 비교적 영속적인 특질과 독특한 특성’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Character’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학 안에서도 ‘Personality’와 ‘Character’에 대한 관계가 모호한 가운데 이 두 용어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역사적으로 성격심리학자들은 ‘Character’를 ‘Personality’의 한 측면으로 간주했다(Allport, 1921; Allport & Vernon, 1930; Watson, 1919).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들은 ‘Character’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기 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로서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을 설명할 때 ‘Character’를 사용한다(예, Peterson and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2004)은 ‘Character’의 개념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trait)로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Character’를 ‘Personality’ 한 차원이 아니라 ‘Character’ 자체의 특징으로 도덕성과 긍정성을 나타내는 ‘성격강점’과 ‘덕목’으로 구분하고, 성격강점과 덕목은 6개의 상위개념(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 하에 다시 하위 강점을 24개²⁾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에서의 ‘Character’ 및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Personality’를 연구했던 성격심리학 보다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Character’ 및 ‘성격강점’ 정의는 ‘Personality’에 정의만큼 다양하지 않다.

Personality와 Character의 관계

최근에 ‘Personality’와 ‘Character strength’를

2) VIA의 상위유형은 다음과 같이 하위유형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에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개방성, 통찰; 용기에 진정성, 용감함, 인내, 활력; 인간애에 친절, 사랑, 사회지능; 정의에 공정함, 리더십, 시민의식; 절제에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초월성에 심미안, 감사, 희망, 유머, 영성을 포함한다.

비교한 연구들은 이 두 요소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Cawley et al. 2000; McGrath et al. 2017; Peterson and Seligman 2004). Park와 Peterson (2006)은 ‘Personality’와 ‘Character’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Personality’는 유전에 의해 40~60% 정도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haracter’는 학습되거나 지속적으로 발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Personality’와 ‘Character’의 발달상에 차이는 있지만 각각을 구성요소는 비슷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Personality’의 특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FFM(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Goldberg, 1993)와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을 측정하는 VIA(Values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 Peterson and Seligman 2004)의 하위요소들 간에 대부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ttman-Ovadia and Lavy 2012; Macdonald et al. 2008; Nofle et al.; Noronha and Campos 2018).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Personality’와 ‘Character’간의 개념적 차이 및 관계를 명확히 결론짓기는 어렵지만(Neto et al., 2014), ‘Personality’와 ‘Character’는 ‘특질’이라는 요소로 설명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리하면, ‘Personality’와 ‘Character’간의 정의와 개념상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Character Evidence’를 ‘성격증거’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격증거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Evidence Rule) 제 404조(a)항³⁾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격의

3) 미국연방증거규칙은 성격증거를 다음과 같이 규

특질에 관한 증거는 특정상황에서 그 성격이나 특질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성격증거의 경우, 좋은 성격증거(Good Character Evidence)는 보통법의 규율을 받지만, 나쁜 성격증거(Bad Character Evidence)는 2003년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의 규율을 받는다. 2003년 형사사법에 따르면⁴⁾ 나쁜 성격증거란, ‘기소된 범죄나 수사 중인 위법행동에 대한 증거가 아닌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성향’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권에서의 성격증거는 법률에서 불확정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영국 보통법상 성격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예단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2003년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에 의해 성격증거법칙을 대폭 수정했지만(Collin, 2010) 여전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Paul, 2004). Park과 그의 동료들은(1998) 증거법상 ‘Character’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

정하고 있다. ‘FRE404(a) (Character Evidence) (1) (Prohibited Uses) Evidence of a person’s character or character trait is not admissible to prove that on a particular occasion the person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r trait.

4) 영국형사사법은 성격증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References in this Chapter to evidence of a person’s “bad character” are to evidence of, or of a disposition towards, misconduct on his part, other than evidence which - (a) has to do with the alleged facts of the offence with which the defendant is charged, or (b) is evidence of mis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that offence.

도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법률상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운데, Graham(2015)은 미국연방증거규칙상 '성격'은 '어떤 사람의 본성이나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향(disposition)이나 진실함과 같은 특별한 특질(trait)'을 의미한다고 했다. 반면, 영국 형사사법에서의 성격증거에 대해 Anderson(2012)은 '성격'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성(tendency) 혹은 성향(propensity)'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성격증거에 대한 영국과 미국 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행동상의 기질이나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미법상 성격증거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심리학에서의 '성격'의 의미와 비교하여 의미상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양측의 의미를 왜곡할 만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학에서의 '성격'의 의미와 영미법상 '성격'의 의미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법적 판단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에 대한 연구가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일부 사건에 대해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전문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륙법체계를 영미법계의 배심원제도로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즉, 법에 관한 전문가인 법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는 일반인의 법 감정을 판결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각자의

'합리적 이성'에 따라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법률과 증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에 비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을 편향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⁵⁾. 더구나 종합 편성 케이블 티비나 뉴스 전문 케이블 티비, 혹은 팟캐스트와 같이 대중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것들을 통해 일부 사건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고 사실인정에서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배심원제도가 정착된 영미권에서의 여러 오판 사례들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Sheppard v. Maxwell* 판례이다(*Sheppard v. Maxwell* 384 U.S. 333(1966)). Sheppard는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 법원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판기간 내내 언론은 수사관의 심증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McKay & Graham, 1966; Flynn, 1993; Hengstler, 2008). 12년이 지난 다음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우리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초점을 두고 배심원들의 법적 증거판단을 포함한 심리과정에서 작용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5) 김청택과 최인철(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판사 및 사법연수생 집단'에게 재판사나 리오를 제시했을 경우 대학생 집단에게 보다 강한 정박효과와 높은 확증편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법관보다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공정한 예단을 초래하거나 당해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유무죄판단 및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실제 재판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를 사용하여, 성격증거가 판결은 물론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과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은 긍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을 높이 평가하고 유죄판단을 더 많이 내릴 것이다.

가설 2. 피고인의 성격증거로부터 유도된 최초판단은 이후에 제시되는 각 쟁점에 대한 검사측 혹은 변호인측 주장과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S대학교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92명(남자 47명(51.1%), 여자 45명(48.9%))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23세(SD=2.6)였다. 실험참여자들 중 법학 관련 수업을 듣거나 이전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자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포함해 총 5번의 재판을 거쳐 진행된 사건으로 최종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

었다.⁶⁾ 이 사건을 실험자극으로 선택한 이유는 피고인의 범행 혹은 무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간접증거만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증거의 특성을 조작하여 ‘실제 피고인성격증거 조건(이하 실제 피고인 성격특성조건)’, ‘긍정적 성격증거 조건(이하 긍정적조건)’ 그리고 ‘부정적 성격증거 조건(이하 부정적조건)’으로 나눴다(표 1 참고). ‘실제 특성조건’은 판결문과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성격특성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조건, 긍정적조건, 실제 피고인성격증거 간의 차이는, 제시된 자극에서 다른 증거와 정보의 양은 동일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5가지 정보(나이, 가정환경, 성향, 주변 평판 그리고 취미)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통제집단은 피고인에 대한 성격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각 개별 정보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성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신 5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성격증거가 달라지도록 조작하였다. 각 피험자들은 부정적조건과 긍정적조건, 실제특성조건, 그리고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주장 판단과정에서는 사건의 쟁점사항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은 실제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1심 울산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 고평 6 판결; 환송전 2심 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2004노403 판결; 환송심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164 판결; 최종심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948 판결 참고.

표 1. 조건별 성격증거 특성

조건별 성격증거 특성				
	긍정적 성격증거	부정적 성격증거	실제 피고인의 성격증거	통제조건
나이	60대	30대	50대	
가정환경	남편이 2년 전 암으로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는 여성	3번의 이혼경험이 있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성향 (사건 전날 상황묘사)	동네 가게에 들려 주인의 손자와 놀아줌	동네가게에 들려 도박판에 대해서 이야기 함	동네 가게에 들려 주인의 손자와 놀아줌	무정보
주변평판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사고 있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도박판을 자주 벌임		
취미 및 직업	남편이 사망한 후 빌딩 청소 등으로 생계를 유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평소 도박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도박판에 돈을 대어주고 이자를 취해 생활	도박판에 돈을 대어주고 이자를 취해 생활	

표 2. 사건의 쟁점 사항

쟁점 사항	
쟁점1	청산염에 의한 피해자 사망
쟁점2	피해자 옆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담배발견
쟁점3	컨디션병과 같이 피해자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수첩과 신용카드 등이 피고인 집과 외벽사이에서 발견된 점
쟁점4	귀금속이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점
쟁점5	피해자를 발견한 날 피해자의 집을 타인과동행한 이유
쟁점6	피해자 살해시각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 및 범죄의 치밀성
쟁점7	완전 나체인 상태로 그 주검이 발견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레즈비언일 가능성
쟁점8	피해자 휴대폰의 행방
쟁점9	사건관련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관계
쟁점10	살인동기

(10개)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2 참고). 각 쟁점에 대한 제시 순서는 실험참여자마다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실험설계

이 실험은 혼합요인설계(mixed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피험자 간 요인은 성격증거유형을 4수준(부정적 특성, 긍정적 특성, 실제 피고인 특성, 통제조건)으로 조작하였다. 피험자 내 요인은 판단시점(최초판단, 최종판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각 시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 유죄 확률 그리고 쟁점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과 유죄확률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이전에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 등 연구 내용 일체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 프로그램인 Qualtrics를 이용하여 실험자극을 제시하고, 반응을 기록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다른 실험자극을 각각 10분 간 읽고,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을 판단하였다(그림 1 참고). 다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10개

의 쟁점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각 쟁점별 유죄확률을 판단하였다. 쟁점이 제시되는 순서는 실험참여자마다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결 과

실험조건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결과 및 상관분석 결과

성격증거의 주효과와 조건 내의 판단시점에 따른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격증거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20)=5.130, p<.01, \eta^2=.01$). 즉, 유죄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조작된 성격 증거에 따라 달라졌다. 판단시점에 따라 최초-최종 유죄확률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격증거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20)=2.492, n.s.; F(3,120)=.516, n.s.$).

사후분석에서, 판단 시점별 유죄확률 판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초유죄확률과 최종유죄확률 모두에서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최초유죄확률: $F(3,120)=4.848, p<.01, \eta^2=.12$; 최종유죄확률: $F(3,120)=3.67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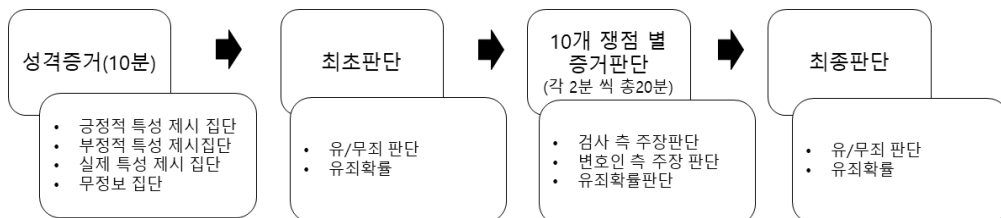


그림 1. 실험절차

표 3. 성격증거특성에 따른 최초, 최종 유죄확률에 대한 기술통계량(N=124)

	부정적(A) (n=26)	긍정적(B) (n=28)	실제 특성(C) (n=38)	무정보(D) (n=32)	F
	M(SD)	M(SD)	M(SD)	M(SD)	
최초 유죄확률	61.08 (21.68)	39.68 (26.23)	51.89 (20.57)	56.37 (19.49)	4.848** A=C=D>B
최종 유죄확률	63.19 (19.40)	45.21 (20.45)	54.55 (18.93)	56.22 (21.79)	3.672* A=C=D>B
t	-0.103	-0.235	-0.134	0.007	

p<.01:**, p<.05:*

$\eta^2=.11$ (표 3 참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와 최종 유죄확률판단에서 모두 부정적조건과 실제 피고인특성조건 그리고 무정보조건이 긍정적 조건 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유죄 확률 판단을 내렸다. 무정보조건의 경우에는, 긍정적 성격증거 조건보다 유죄확률을 높게 평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성격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판단이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성격증거조건에 따라서 유죄 확률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판단시점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최초판단과 최종 유죄확률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초유죄확률 판단, 쟁점별 유죄 확률 판단 그리고 최종유죄확률판단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이 결과는 피고인에 대

해 최초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했을 경우 이후 제시되는 쟁점별 유죄확률판단과 최종유죄확률판단에 대해 일관되게 높게 평가하며, 반대로 최초유죄확률판단을 낮게 판단했을 경우 이후 제시되는 쟁점별 유죄확률 판단 및 최종 유죄확률판단에 대해 일관되게 낮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증거 특성이 최초 유·무죄판단과 최종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효과

최초유무죄판단의 경우 4조건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622$, $p<.01$). 유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부정적 성격증거조건(73.1%)이었으며, 무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긍정적 성격증거 조건(26.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최종유무죄판단의 경우 4조건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742$, $p<.01$). 유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부정적 성격증거조건(73.1%)이었으며, 무죄의 비율

7)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쟁점1(청산염에 의한 피해자 사망)과 쟁점8(피해자 휴대폰의 행방)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쟁점 별 유죄확률										
		쟁점1	쟁점2	쟁점3	쟁점4	쟁점5	쟁점6	쟁점7	쟁점8	쟁점9	쟁점10	최종 유죄확률
요인	최초 유죄확률 판단											
최초유죄 확률	1											
쟁점1	.538**	1										
쟁점2	.431**	.465**	1									
쟁점3	.489**	.416**	.611**	1								
쟁점4	.449**	.228*	.540**	.576**	1							
쟁점5	.447**	.390**	.441**	.473**	.366**	1						
쟁점	.554**	.376**	.387**	.510**	.450**	.591**	1					
쟁점7	.330**	.270**	.440**	.466**	.600**	.340**	.554**	1				
쟁점8	.335**	.132	.494**	.420**	.449**	.395**	.510**	.495**	1			
쟁점9	.372**	.333**	.449**	.492**	.463**	.339**	.451**	.687**	.496**	1		
쟁점10	.497**	.316**	.461**	.569**	.519**	.375**	.578**	.631**	.507**	.622**	1	
최종 유죄확률	.678**	.445**	.539**	.620**	.492**	.447**	.659**	.466**	.583**	.473**	.644**	1
평균(M)	50.77	55.92	56.67	55.30	47.82	64.38	55.32	40.04	52.37	43.86	45.97	54.15
표준편차 (SD)	23.957	21.919	17.099	16.256	18.949	17.544	22.286	20.631	15.808	19.718	21.812	20.522

표 5. 피고인의 성격증거특성에 따른 유, 무죄 판단 차이

변수		성격증거								$\chi^2(df)$
		부정적		긍정적		실제 특성		무정보		
		n	%	n	%	n	%	n	%	
최초판단	유죄	19	73.1	7	25.0	17	44.7	15	46.9	12.621**
	무죄	7	26.9	21	75.0	21	55.3	17	53.1	(3)
최종판단	유죄	19	73.1	10	35.7	16	42.1	16	50	8.742*
	무죄	7	26.9	18	64.3	22	57.9	16	50	(3)

$p < .01$:**, $p < .05$:*

이 가장 높은 조건은 긍정적 성격증거 조건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증거 특성별 최초유무죄판단과 최종유무죄판단의 변화 정도

성격증거특성에 따른 최초유무죄 판단에서 최종유무죄 판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고). 부정적 조건은 ‘유→유’가 17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무’ 5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조건은 ‘무→무’ 18명(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유’ 7명(25.0%) 순으로 나타났다. 무정보인 경우, ‘무→무’ 18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유’ 13명(3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조건은 최초-최종판단이 ‘유→유’를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65.4%인 데 비해, 긍정적과 무정보조건은 각각 25.0%와 34.2%를 보였다. 반면, 긍정적 조건은 최초-최종판단이 ‘무→무’를 유지하는 비율이 64.3%로 부정적 조건의 19.2%와 대조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격증거조건에 따라서 최초판단과 최종판단의 변화 정도가 다른데,

표 6. 성격증거조건에 따른 최초판단-최종판단의 변화

성격증거조건	최초-최종판단	빈도	비율(%)
부정적	유→유	17	65.4
	유→무	2	7.7
	무→유	2	7.7
	무→무	5	19.2
긍정적	유→유	7	25.0
	유→무	0	0.0
	무→유	3	10.7
실제 피고인의 특성	무→무	18	64.3
	유→유	13	34.2
	유→무	4	10.5
무정보	무→유	3	7.9
	무→무	18	47.4
	유→유	12	37.5
	유→무	3	9.4
	무→유	4	12.5
	무→무	13	40.6

실제 피고인의 특성조건과 무정보조건인 경우 부정적 조건과 긍정적 조건 보다 최초판단과 최종판단의 변화비율이 높다.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형성된 최초 유·무죄 판단이 쟁점별 유죄확률, 검사측 주장판단 및 변호인측 주장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 대한 최초 유·무죄판단이 쟁점별 유죄확률, 그리고 쟁점별 검사측과 변호인측에 대한 주장판단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두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s t-test)으로 알아보았다. 쟁점의 이슈와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을 했을 경우, 무죄판단을 했을 때보다, 모든 쟁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표 7 참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을 경우 모든 쟁점에 대한 검사측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평가하였다(표 8 참고). 이에 반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을 경우 쟁점별 변호인 측 주장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 변호인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표 9 참고). 다만 10개 중 4개의 쟁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개의 쟁점 중 2개의 쟁점(쟁점1과 쟁점4)은 DNA와 관련된 증거였고, 이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자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였다. 이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최초 유무죄판단에 따라 검사측이 제시한 DNA증거에 반박하는 변호인 측의 반론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표 7. 최초유죄·무죄 판단여부에 따른 쟁점별 유죄확률에 대한 차이

요인	유죄(n=58)		무죄(n=66)		t	p	coben's d
	M	SD	M	SD			
최초판단	71.55	11.93	35.23	15.64	14.381**	.000	2.60
쟁점1	70.53	14.76	45.63	20.67	6.735**	.000	1.22
쟁점2	64.60	18.68	50.18	16.13	4.624**	.000	.84
쟁점3	62.44	16.58	49.62	16.33	4.191**	.000	.76
쟁점4	56.12	19.53	40.03	16.72	5.026**	.000	.91
쟁점5	73.34	16.94	58.43	16.12	5.499**	.000	.99
쟁점6	68.27	17.98	47.09	20.71	5.220**	.000	.95
쟁점7	44.87	21.44	32.18	18.76	4.145**	.000	.75
쟁점8	57.51	16.77	49.75	16.12	3.084**	.003	.56
쟁점9	50.34	21.39	38.03	18.21	4.196**	.000	.76
쟁점10	54.37	20.62	34.75	19.30	5.043**	.000	.91
최종판단	67.19	16.47	43.69	17.83	7.587**	.000	1.37

p<.01:**, p<.05:*

표 8. 최초 유·무죄 판단여부에 따른 쟁점별 검사측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차이

요인	최초판단				t	p	cohen's d
	유죄(n=58)		무죄(n=66)				
	M	SD	M	SD			
쟁점1	70.39	16.87	49.45	22.35	5.823**	0.000	1.05
쟁점2	75.79	13.18	62.18	17.66	4.806**	0.000	.87
쟁점3	66.20	17.40	56.65	17.78	3.015*	0.020	.54
쟁점4	60.89	21.36	47.80	20.98	3.438**	0.002	.62
쟁점5	78.31	15.05	68.57	15.53	3.532**	0.054	.64
쟁점6	75.72	15.23	58.98	21.14	4.996**	0.000	.90
쟁점7	46.43	20.47	34.28	19.32	3.395**	0.005	.61
쟁점8	63.39	17.01	55.87	17.06	2.448*	0.039	.44
쟁점9	52.36	20.51	39.68	18.12	3.655*	0.020	.66
쟁점10	60.43	19.93	42.95	22.31	4.572**	0.004	.83

p<.01:**, p<.05:*

표 9. 최초 유·무죄 판단조건에 따른 쟁점별 변호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차이

요인	최초판단				t	p	cohen's d
	유죄(n=58)		무죄(n=66)				
	M	SD	M	SD			
쟁점1	32.63	19.03	46.01	20.94	-3.803**	0.000	-.69
쟁점2	47.96	21.36	55.39	19.19	-2.039**	0.000	-.37
쟁점3	46.56	19.97	51.59	18.92	-1.436	0.153	-.26
쟁점4	49.65	23.51	59.84	19.84	-2.617**	0.002	-.47
쟁점5	34.37	23.04	36.21	19.59	-.479	0.054	-.09
쟁점6	48.77	23.18	57.65	20.79	-2.247**	0.026	-.41
쟁점7	63.44	19.81	65.63	18.94	-.628	0.531	-.11
쟁점8	52.29	19.88	53.86	15.37	-.495	0.621	-.09
쟁점9	53.39	21.81	51.48	20.48	.503	0.616	.09
쟁점10	59.79	22.61	60.13	22.33	-.085	0.932	-.02

p<.01:**, p<.05:*

논 의

본 연구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최초판단에 영향을 주며, 최초판단은 이후 쟁점별로 제시되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하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은 긍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보다 유죄확률이 높게 평가되었고, 유죄판단의 빈도도 높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에서보다 유죄확률을 낮게 평가했으며, 긍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보다는 높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재판 전 혹은 재판과정에서 제시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따라 유·무죄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죄판단을 한 사람의 경우 검사 측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무죄로 판단한 사람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높이 평가했으며, 최초로 유죄판단한 사람은 무죄판단한 사람보다 쟁점별 유죄 확률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판단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확증편향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아울러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유·무죄판단과 유죄확률 판단을 하게 하였을 때에도 최초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유지되는 이른바 확증편향과 신념고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재판상황에서는 배심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평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성격

증거로 인해 유도된 최초판단이 최종판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배심원단 중 다수의 배심원이 당해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예단과 편견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평의과정에서 편향된 생각을 다른 배심원들에게 확산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인정과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허용하거나 배제시키는 기준, 허용되는 성격증거의 현출 방식 등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와 함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실인정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경력 및 전과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판절차이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판절차이분론이란 ‘공판절차를 범죄사실 인정단계와 양형단계로 엄격히 분리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유죄 혹은 무죄의 선고만을 행하고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양형판단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입법론적 주장을 말한다(신동운, 2019). 공판절차이분론의 도입에 대해 소송절차의 지연과 재판부 구성 등 제도적·현실적 문제로 인한 반대 입장이 존재하지만, 입법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력하다(이은모, 2018; 이창현 2017).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무죄판단절차에서의 성격증거는 원칙적으로 보다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판절차의 이분화와 같이 절차적으로 증거의 수용정도를 구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성격증거 뿐만 아니라 증인 및 피해자의 성격증거도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피해자 및 증인의 성격

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쟁점의 이슈와 상관없이 유죄판단을 했을 경우, 무죄판단을 했을 때보다 모든 쟁점에서 유죄확률과 검사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을 경우 쟁점별 판단에서는 모든 변호인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쟁점은 4개였다. 4개의 쟁점 중 2개의 쟁점(쟁점1과 쟁점2)은 DNA와 관련된 증거였고, 이 DNA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자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였다. 즉, 검찰측에 의해 DNA증거가 제시된 이후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면 DNA증거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판단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검찰측이 제시한 DNA증거나 전문가 증언에 대해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면 DNA증거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유사하지만 최종판단에는 변함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반대신문이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으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Austin & Kovera, 2015; Kovera, McAuliff & Herbert, 1999; Levett & Kovera, 200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과학적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드라마 시청빈도⁸⁾ 혹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사전지식 등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차 변인을 추가하여 반대신문이 과학적 증거 및 전문가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피고인의 성격증거와 같이 당해 사건과 관련 없는 사항이 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무의식적 사고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Goodman-Delahunty & Sporer, 2010; Myers & Talarico, 1987; Steffensmeier, D. & Demuth, 2006; Zebrowitz & Donald, 1991). 무의식적 사고 이론(Unconscious Thought Theory: UTT Dijksterhuis & Nordgren, 2006)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사고한 후 판단할 때가 무의식적으로 사고한 후 보다 더 편향된 판단을 내렸고, Strick, Stoeckart, Dijksterhuis(2015)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피고인의 성격

시청빈도가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김민지, 2011), 미국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와 같이 범죄수사드라마를 시청한 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기대만큼 재판과정 중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Barak & Shelton, 2009; Robbers, 2008).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들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달리했을 때 과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8) 범죄드라마 시청 빈도가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연구들에 따라 상이하다. 가령, 한국에서 일반인과 검사를 대상으로 범죄드라마

증거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과정 중 어느 한쪽에 의해 비롯된 결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중과정이론(Double Process Theory)에 의하면 무의식적 과정은 Type1에 속하며, 의식적 과정은 Type2에 속한다. 이 두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속도와 판단의 편향성으로 구분되어진다. 판단이 빠르고 편향될 경우 Type1에 속하며, 판단이 느리고 규범적일 경우 Type2에 속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실험참여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주어진 시간은 최소 10분이었고, 실험참여자들의 평균 응답시간은 504.34초($SD=11.23$)였다. 실제 재판상황에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과 견주어 봤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지만, 요약된 사건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서는 짧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제시된 각 증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의식적으로 판단했다거나 무의식적으로 판단했다고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최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의식적 사고에 의한 것인지 무의식적 사고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연구에서 암묵적 연합검사(IAT:Implicit Associate Test)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안면타당도(face validity)에

서 문제가 있다. Nunez, Dahl, Tang과 Jensen (2007)에 따르면 대학생 실험집단이 실제 배심원들 보다 학력이 높고 어리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실제 재판 상황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성격 증거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다.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신동운, 2019), 법관의 판단 역시 편향으로부터 항상 자유롭지만은 않다. 김청택과 최인철(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제시된 재판사나리오에 대해 법관은 대학생보다 낮은 확증편향을 보였으나 일반 추리문제에서는 법관들이 오히려 대학생보다 높은 확증편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축적된 경험과 교육이 재판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감소시키지만 법조 경력이 낮은 법관의 경우 편향된 사고로 증명력을 판단하여 판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의 유형이 법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법관도 성격증거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면 성격증거로 인한 편향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재판 전 혹은 재판과정에서 노출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배심원의 사실인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기본적으로 배제하되, 허용되는 기준을 매우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론재판 및 감성재판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격증거의 허용과 배제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격증거가 허용된다면 법적 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될지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지 (2011). CSI 효과: 검사와 일반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25-41.
- 김청택 & 최인철 (2010). 범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法學*, 51(4), 317-345.
- 이은모 (2018). *형사소송법*, (6판). 박영사.
- 이창현 (2017). *형사소송법*, (3판). 피앤씨미디어.
- 신동운 (2019).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11판). 법문사.
- Allport, G. W., & Vernon, P. E. (1930). The field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27(10), 677-730.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Oxford, England: Holt, Reinhart & Winston.
- Anderson, B. J. (2012). Recognizing Character: A New Perspective on Character Evidence. *The Yale Law Journal*, 121(7), 1912-1968.
- Austin, J. L., & Kovera, M. B. (2015). Cross-examination educates jurors about missing control groups in scientific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1(3), 252-264.
- Banicki, K. (2017). The character-personality distinction: An historical, conceptual, and functional investigation. *Theory and Psychology*, 27, 50-68.
- Blanck, P. D., Rosenthal, R., & Cordell, L. H. (1985). The appearance of justice: Judges'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in criminal jury trials. *Stanford Law Review*, 38, 89-164.
- Bloom, F. (2018). *Character Flaws*, University of Colorado Law School, 89. 1101-1163.
- Cawley, J. (2000). *Body Weight and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7841.
- Colin Tapper. (2010). *Cross and Tapper on Eviden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audistel, H. C., Hosch, H. M., Holmes, M. D., & Graves, J. B. (1999). Effects of defendant ethnicity on juries' dispositions of felony c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317-336.
- Dijksterhuis, A., & Nordgren, L. F. (2006). A theory of unconscious though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95-109.
- Feist, J., & Feist, G. J. (2006). *Theories of Personality*. (6th ed). McGraw Hill. New York.
- Flynn, J. F. (1993). Prejudicial publicity in criminal trials: Bringing sheppard v.maxwell

- into the nineties. *New England Law Review*, 27(3), 857-882.
- Gleason, J. M., & Harris, V. A. (1976). Group discussion and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as determinants of judgments by simulated jur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86-191.
- Gill, C. (1990). The character-personality distinction. *Character and individuality in Greek literature*. Oxford, UK: Clarendon Press.
- Goodman-Delahunty, J., & Sporer, S. L. (2010). Unconscious influences in sentencing decisions: A research review of psychological sources of disparity. *Australi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2, 193-6.
- Hengstler, G. A. (2008). Sheppard v. maxwell revisited do the traditional rules work for nontraditional media.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71(4), 171-180.
- Kassin, S. M., & Sommers, S. R. (1997). Inadmissible testimony, instructions to disregard, and the jury: Substantive versus procedural consider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46-1054.
- Kim, Y. S., Barak, G., & Shelton, D. E. (2009). Examining the CSI-effect in the cas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and eyewitness testimony: Multivariate and path analys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452-460
- Kovera, M. B., McAuliff, B. D., & Hebert, K. S. (1999). Reasoning about scientific evidence: Effects of juror gender and evidence quality on juror decisions in a hostile work environment ca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362-375.
- Kristjansson, K. (2012). Selfhood, moralit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y & Psychology*, 22, 591-606.
- Kupperman, J. (1991). *Charact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vett, L., & Kovera, M. B. (2008). The effectiveness of opposing expert witnesses for educating jurors about unreliable expert evidence. *Law and Human Behavior*, 32, 363-374.
- Levett, L., & Kovera, M. B. (2009). Psychological mediators of the effects of opposing expert testimony on juror decis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5(2), 124-148.
- Littman-Ovadia, H., & Lavy, S. (2012). Character strengths in Israel Hebrew adaptation of the VIA inventory of strength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8(1), 41-50.
- London, K., & Nunez, N. (2000). The effect of jury deliberations on jurors' propensity to disregard inadmissible ev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932-939.
- Macdonald, C., Bore, M., & Munro, D. (2008). Values inAction scale and the Big 5: An empirical indication of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787-799.
- McGrath, R. E., Greenberg, M. J., & Hall-Simmonds, A. (2017). Scarecrow, Tin Woodsman, and Cowardly Lion: The three factor model of virtu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 McKay, R. B.; Graham, F. (1966). Addendum: Comments on sheppard v. maxwell 384 u.s. 333 (1966). *Villanova Law Review*, 11(4), 737-741.

- Mischel, W. (1976). *Introduction to personality*. New York: Holl, Rinehart & Winston.
- McKinnon, C. (1999). *Character, virtue theories, and the vices*. Peterborough, Canada: Broadview Press.
- Graham, M. H. (2015). *Federal Rules of Evidence*, (9th)ed. Thomson Reuters.
- Myers, M. A., & Talarico, S. M. (1987). *The social contexts of criminal sentencing*. New York: Springer-Verlag.
- Nagel, S., & Weitzman, L. (1972). Sex and the unbiased jury. *Judicature*, 56, 108-111.
- Neto, J., Neto, F., & Furnham, A. (2014). Gender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elf-rated strengths among you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8(1), 315-327.
- Noronha, A. P. P., & Campos, R. R. F. (2018).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personality traits. *Estudos de Psicologia*, 35(1), 29-37.
- Nunez, N., Dahl, M. J., Tang, C. M., & Jensen, B. L. (2007). Trial venue decisions in juvenile cases: Mitigating and extralegal factors matter.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1), 21-39.
- Park, R. C. (1996). Character Evidence Issues in the O. J. Simpson Case-Or, Rationales of the Character Evidence Ban, With Illustrations from the Simpson Case,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67, 747-776.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0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classification and handboo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berts, P., & Zuckerman, A. *Criminal Evid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C. A., Cooper, E. H., & Miller, A., R. (2011).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Evidence* (1st ed). West Publishing Company.
- Robbers, M. L. (2008). Blinded by scien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forensic television shows and its effect on criminal jury trial.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1), 84-102.
- Madelijn Strick, Peter F. Stoeckart & Ap Dijksterhuis. (2015). Thinking in Black and White: Conscious Thought Increases Racially Biased Judgments Through Biased Face Memory.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6, 206-218.
- Steffensmeier, D. & Demuth S. (2006). Does Gender Modify the Effects of Race-Ethnicity On Criminal Sanctioning? Sentences for Male and Female White, Black, and Hispanic Defendan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2(3), 241-261.
- Tversky, A. and Kahneman, D. (1986).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The Journal of Business*, 59(4), 251-278.
- Watson, J. B. (1919). A schematic outline of the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26, 165-196.
- Weisberg, H. I. (2010). *Bias and Causation: Models and Judgment for Valid Comparisons*, Hoboken, N.J.: Wiley.
- Zebrowitz L. A, McDonald S. M. (1991). The

한국심리학회지 : 법

impact of litigants' baby-facedness and attractiveness on adjudications in small claims courts. *Law and Human Behavior*, 15, 603-623.

1 차원고접수 : 2019. 09. 22.

심사통과접수 : 2019. 11. 11.

최종원고접수 : 2019. 11. 22.

The effects of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on fact-finding

Ko Minjo

Park Joo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affects fact-finding and evidenc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manipulating the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differently affected the initial judgm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was presented were judged to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guilt against the defendant tha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ositive character evidence was presented, and the frequency of the conviction was higher. The ruling, which was formed by character evidence of the defendant also affected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s claims based on each issue. It can be seen that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induced by the character evidence of the defendant is maintained not only in the judgment of evidence but also in the final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legal system rule out this bias for a fair trial.

Key words : character evidence, fact-finding, evidence judgement, confirmation bias, Division of Fact-finding and Sentencing